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육공무직원 등 채용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성사유치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성사유치원에서는 금번 학교 종합감사 대상기간 중 교육공무직 등 기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교육공무직원 등 채용 시 동일 근로자의 이전 대체직 채용시 결격사유를 조회한 내역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교육공무직 등 채용 결격사유 조회 부적정 현황

| 직(종) | 성명 | 임용기간 | 결격사유 조회 여부 | |
|-----------------|-----|-----------------------|--------------|---------------|
| | | | 성범죄경력 조회일 | 아동학대 전력조회일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08-05~2021-08-05 | 2021-05-31 | 2021-05-31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10-25~2021-10-25 | 2021-07-05 | 2021-07-05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11-19~2021-11-19 | 2021-07-05 | 2021-07-05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12-03~2021-12-03 | 2021-07-05 | 2021-07-05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12-10~2021-12-10 | 2021-07-05 | 2021-07-05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12-15~2021-12-15 | 2021-07-05 | 2021-07-05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12-16~2021-12-17 | 2021-07-05 | 2021-07-05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12-31~2021-12-31 | 2021-07-05 | 2021-07-05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2-01-04~2022-01-04 | 2021-07-05 | 2021-07-05 |
| 방과후과정 전담사 대체인력 | ○○○ | 2022-01-07~2022-01-07 | 2021-07-05 | 2021-07-05 |
| 방과후과정 전담사 대체인력 | ○○○ | 2022-01-10~2022-01-10 | 2021-07-05 | 2021-07-05 |
| 행복한울타리 방과후과정 대체 | ○○○ | 2022-01-20~2022-02-18 | 2021-07-05 | 2021-07-05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12-23~2021-12-23 | 2021-08-25 | 2021-08-25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12-31~2021-12-31 | 2021-08-25 | 2021-08-25 |
| 행복한울타리 방과후과정 대체 | ○○○ | 2022-01-20~2022-02-18 | 2021-08-25 | 2021-08-25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07-15~2021-07-15 | 2021-05-21 | 2021-05-21 |
| 방과후전담사대체인력 | ○○○ | 2021-11-26~2021-11-26 | 2021-07-05 | 2021-07-05 |
| 행복한울타리 방과후과정 대체 | ○○○ | 2022-01-20~2022-02-18 | 2021-07-05 | 2021-07-05 |

【조치할 사항】

- ① 성사유치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예산과목 혼용 집행

관계기관 성사유치원

내 용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1조(예산안의 편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운영수당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직원이나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당직비,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교재구입, 물품구입 등은 교육운영비 또는 일반수용비 목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성사유치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세입세출과목을 혼용하여 운영수당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교재구입, 학부모회 운영물품 구입하여 잘못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예산과목 혼용 집행 내역

| 연번 | 적요 | 부당과목 | 정당과목 | 지출일자 | 지출액 (단위: 원) |
|----|--|------|-------|------------|----------------|
| 1 | (01421) 행복한울타리 운영 물품 구입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1-02-23 | 80,000 |
| 2 | (00233) 2021학년도 4월 특성화 교재 구입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1-04-29 | 1,512,000 |
| 3 | (00403) 2021학년도 6월 특성화 교재 구입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1-06-24 | 1,534,000 |
| 4 | (00709) 학부모회 운영 물품 구입 | 운영수당 | 일반수용비 | 2021-10-27 | 821,100 |
| 5 | (00778) 학부모재능기부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1-10-27 | 183,840 |
| 6 | (00902) 2021학년도 7월 특성화 교재비 지급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1-11-18 | 489,000 |
| 7 | (00907) 학부모회 운영 물품 구입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1-12-13 | 21,400 |
| 8 | (00908) 학부모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1-12-13 | 26,460 |
| 9 | (00921) 학부모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1-12-13 | 35,100 |
| 10 | (00220) 전문직학습공동체 연수 '비건 쿠키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 구입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2-04-28 | 146,170 |

| 연번 | 적요 | 부당과목 | 정당과목 | 지출일자 | 지출액 (단위: 원) |
|------------|---|------|-------|------------|-------------------|
| 11 | (00270) 2022학년도 4월 특성화 교재비 지급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2-05-09 | 1,530,000 |
| 12 | (00354) 2022학년도 5월 특성화 교재비 지급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2-06-07 | 1,137,500 |
| 13 | (00643) 2022학년도 6월 특성화 교재비 지급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2-09-15 | 1,505,000 |
| 14 | (00649) 2022학년도 여름 행복한올타리 (8월~9월) 특성화 교재비 지급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 | 2022-09-16 | 1,005,000 |
| 합 계 | | | | | 10,026,570 |

【조치할 사항】

- ① 성사유치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